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6항까지 중 “신용정보업”을 각각 “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”으로 하고, 제4조 중 “신용정보회사”를 “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”로 한다.

제5조 제목 중 “검업”을 “검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신용정보회사(영리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업 외의 다른 업무를 검업하려는 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)”를 “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”로 하고, “검업”을 “검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“검업”을 “검영”으로 하고, “신용정보회사”를 “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”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“검업”을 “검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“검업”을 “검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의 제한) 영 제13조제5호에서 “총리령으

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

1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서 개인에 대하여 건강의 유지·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
2.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수행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업무

제7조 중 “제10항”을 “제11항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붙임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법인세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제5호 중 “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(이하 이 조에서 “신용등급”이라 한다)”를 “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(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)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(이하 이 조에서 “개인신용평점”이라 한다)”로 하

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"신용등급"을 "개인신용평점"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허가심사 절차 등) ①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3항에 따라 <u>신용정보업</u>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, 신청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		제3조(허가심사 절차 등) ① ---- ----- ----- ----- <u>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</u> ----- ----- ----- -----.		
② 금융위원회는 <u>신용정보업</u> 허가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, 신청일자, 신청내용,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		② ----- <u>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③ 금융위원회는 <u>신용정보업</u> 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.		③ ----- <u>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
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으로서 신용정보업 허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그 의견을 알리고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
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소명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신용정보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4조(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)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업무범위 및 기간, 휴업 또는 폐업사유 등을 적은 휴·폐업신고서를 금융위원회

④ -----

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-----

--.

⑤ ----- 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-----

⑥ ---- 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---
-----.

제4조(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) -----

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-----

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겸업신고 등) ① 신용정보 회사(영리를 목적으로 신용정보 업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려는 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)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겸업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제1호의 사항을 기재하고,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겸업업무의 예상 영업규모, 손익 전망 등에 비추어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수익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
2. 겸업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·허가·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인가·허가·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협약서
3. 겸업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

-----.

제5조(겸영신고 등) ① 신용정보 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-----

----- 겸영-----

-----.

1. 겸영-----

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 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-----

2. 겸영-----

3. 겸영-----

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,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협약서

②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에 공공 목적의 조사·분석 등의 업무의 내용과 제1항제1호의 사항을 기재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삭 제>

제6조의2(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의 제한) 영 제13조제5호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

1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서 개인에 대하여 건강의 유지·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
2.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수

제7조(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) 법 제27조제10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한 인적·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정한다.	<u>행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하기 위한 업무</u> 제7조(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) -----<u>제1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---	--

<붙임>

[별표]

행정처분의 기준(제6조 관련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업무정지 기간	업무정지 범위
1.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의 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경우	법 제14조 제2항제1호	6개월	전부
2. 제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 또는 취득 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4조 제2항제9호, 법 별표 제1호	6개월	전부
3.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겸영업무를 겸영 한 경우	법 제14조 제2항제2호	3개월	일부
4.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부수업무를 한 경우	법 제14조 제2항제2호	3개월	일부
5. 법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	법 제14조 제2항제4호	3개월	전부
6.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,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, 법 제22조의8을 위반하여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 또는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직원으로 채용·고용하거나 채권추심업무를 하게 한 경우	법 제14조 제2항제5호	3개월	일부

7.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	법 제14조 제2항제5호의2	3개월	전부
8.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14조 제2항제5호의3	3개월	일부
9.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4조 제2항제9호, 법 별표 제2호	1개월	일부
10. 법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, 탐정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14조 제2항제7호	1개월	일부
11.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또는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	법 제14조 제2항제8호	6개월	전부
12.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	법 제14조 제2항제8호	6개월	전부
13.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4조 제2항제9호, 법 별표 제3호	1개월	일부
14.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4조 제2항제9호, 법 별표 제4호	1개월	일부
15. 법 제45조제7항제4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에	법 제14조 제2항제9호,	1개월	일부

대한 면직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별표 제5호		
16. 법 제45조제7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4조 제2항제9호, 법 별표 제6호	1개월	일부
17. 법 제45조제7항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4조 제2항제9호, 법 별표 제7호	1개월	일부
18.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호·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(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)	법 제14조 제2항제10호	1개월	일부
19.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	법 제14조 제2항제11호	2개월	일부
20.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	법 제14조 제2항제11호	3개월	전부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	
연 락 처	02 - 2100 -2621